

의안번호	제 550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1월 일 (제353회)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1월 6일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0
----------	-----

발의연월일 : 2017년 1월 6일

발 의 자 : 박봉순, 김학철, 연철흠,
박한범, 이연구, 최병윤,
이종욱

1. 개정이유

- 2014. 8. 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준용규정의 변경(안 제4조)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법조문 개정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안 제1조, 안 제5조)
 -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각호의 1 → 각 호의 하나, 기타 → 그 밖의(안 제3조)
 - 당해 → 해당(안 제5조)
-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담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된다.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장 김학두